

##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9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1999. 4. .

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'94.12.22 농어촌정비법제정에 따라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 
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와,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규정  
삭제로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..

### 2. 주요골자

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를 폐지함.

### 3. 폐지조례(안) : 따로붙임

#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(조례제536호 1972.7.8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< 농어촌정비법 >

- 부칙 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
- 부칙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④ 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…… 제 110조·제123조 내지 제143조·제149조 …… 삭제한다

< 농어촌정비법시행령 >

- 부칙 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
  - 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
  - ②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※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

제3조 ③ 사업시행자가 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대행법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.